202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31호)

❍ 2026. 10. 14.

❍ 재정건설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9. 17. 서초구청장(재무과)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9. 28.

다. 상 정 일 자 : 2026. 10. 14.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전(기부채납)

-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내 3층 일부를 공공기여시설로 기부채납받아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통합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함
- 현재 분산되어 있는 업무공간을 통합하여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안정적인 업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기부채납)

-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내 지상 2층 일부를 공공기여시설로 기부채납받아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를 이전하고자 함
- 현재 내곡열린문화센터에 위치한 분소를 이전하여 청소년 및 주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상담환경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청소년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서초구 아버지센터 이전(기부채납)

- 방배동 1018-1번지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받아 서초구 아버지센터를 확장·이전하고자 함
- 현재 방배열린문화센터에 위치한 아버지센터를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의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3060세대 아버지의 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단위 : ㎡, 천원)

사업명	재산가액	위치(지목)	면적	소유자	추진내용	비고(소관)
서초 여성일자리 주식회사 사무실 이전 (기부채납)	토지 2,504,625 건물 6,560,000	양재동 1-26(대)	토지 66.79 건물 334.88	서초구	- 사업목적 및 용도 : 서초여성일자리㈜사무실 이전 - 사업기간 : 2024.2. ~ 2027.5. - 소요예산 : 비예산(기부채납) - 사업규모 : 지상 3층 일부	일자리 경제과
서초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이전 (기부채납)	토지 2,504,625 건물 6,560,000	양재동 1-26(대)	토지 66.79 건물 334.88	서초구	- 사업목적 및 용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확장 - 사업기간 : 2024.2.~2027.5. - 소요예산 : 비예산(기부채납) - 사업규모 : 지상 2층 일부	아동 청년과
서초구 아버지센터 이전 (기부채납)	토지 17,299,880 건물 5,348,835	방배동 1018-1(대)	토지 884 건물 1,692	서초구	- 사업목적 및 용도 : 아버지센터 확장·이전 - 사업기간 : 2023.11.~2027.9. - 소요예산 : 비예산(기부채납) - 사업규모 : 지하 1층~지상 3층	교육 지원과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민희)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관계법령 검토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0조의2[1]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 제출된 안건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처분은 없으며, 취득만 있음. 공유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2]에 따라 매입, 기부채

---

1)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이 해당되는데, 금번 공유재산의 증가는 기부채납 3건임.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7조[3] 및 제4조제1항[4]에 따라 부동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5]의 규정에 따라 ①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20.>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4)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②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③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또한 해당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 2026. 6. 5. 발령·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이러한 기부채납은 재산의 취득행위 중 하나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토지 면적이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6]임.

---

5) **제5조(기부채납)**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 <2022. 4. 20.>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4., 2023. 6. 27.>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6. 2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사업별 주요내용 검토

①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사무실 이전 (기부채납) - 일자리경제과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출 경위

- 2022. 12. 1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87호) 및 2023. 4. 27. 「서초구 양재동 1-26 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52호)」에 따라 2024. 2. 29. 양재동 1-26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가 착공하였음.
-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건립은 양재동 1-26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22층, 연면적 32,667.40㎡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지상 3층 일부를 공공업무시설로 취득하는 사항임.
-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양재동 1-26 역세권 청년주택 내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전 사업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토지의 경우 지상 3층 공공기여시설에 귀속되는 대지권 지분 66.79㎡이며 기준가격은 2,504,625천원(㎡당 공시지가 37,500천원) 이고, 건물은 지상 3층 일부 연면적

334.88㎡로 신축비 기준 6,560,000천원으로 추계되어 총 기준가격은 9,064,625천원임.

- 따라서 해당 재산은 토지 및 건물의 기부채납을 통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건당 1,000㎡ 이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함.
- 또한 해당 기부채납은 토지 66.79㎡와 건물 334.88㎡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증가가 있으며, 취득 후 공공업무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행정재산에 해당함.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직접 관리하고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통합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 2026. 6. 5. 발령·시행) 별표 1 제1호의 기부채납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기부채납 요건 충족 여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 기부대상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방　　법 :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 제외기준 해당여부
  - ▸ 관리가 곤란한 재산: (해당없음) 재산관리관(일자리경제과) 지정하여 직접 관리
  - ▸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해당없음) 서초여성일자리(주) 통합사무실로 활용
  - ▸ 조건이 수반된 재산: (해당없음) 기부채납 조건 없음
  - ▸ 사권이 설정된 재산: (해당없음) 저당권 등 설정된 사권 없음

○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운영 현황

-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서초구가 100% 출자(출자금: 2억 9천만원)하여 2021년 9월 설립한 기관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공클린, 늘풀 플랜테리어, 늘봄카페,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등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기본 현황

- 설립목적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설립형태 : 출자기관(상법상 주식회사) **※ 설립등기일 : '21.9.1.**
- 소요예산 : 비예산(출자금 290백만원)
  ※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자체 예산으로 운영
- 조직체계 : 1사무국 3팀(경영지원팀, 상권사업팀, 사업관리팀)
  ※정원 10명(대표, 정규직 직원 8, 무기계약직 1) / 현원 6명(대표, 정규직 직원 4, 무기계약직 1, 2026. 9. 30. 기준)
- 운영인력 : 총 79명(대표이사, 경영지원팀 3, 상권사업팀 10, 사업관리팀 65) (2026. 9. 30. 기준)

◎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주요 사업

구 분	사 업 명	추 진 내 용
공공대행사업	양재천길 / 양재아트살롱	· 양재천길 로컬브랜드 상권육성기구 수행 및 양재살롱관(문화복합공간) 운영 · 그린몬스터 및 양재아트살롱 운영 등
	케미스트릿강남역	· 케미스트릿 강남역 로컬브랜드 사업 상권육성기구 운영 및 행사 개최 지원
	공 공 클 린	· 관내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기관 총 25개소 청소용역 사업 진행
	아 트 테 리 어	· 지역예술가와 협업하여 소상공인 점포 환경정비(아트테리어) 및 브랜딩 지원
수익사업	늘 풀 (플랜테리어)	· 늘풀 전용공간(서초 말죽거리공원센터 내 늘풀 스튜디오) 운영 활성화 및 플랜테리어 사업 확대 · 늘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체 수익사업 활성화
	늘 봄 카 페	·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 활용한 카페 운영사업 진행(총 7개 지점 운영 중) - 살롱in양재천, 반포3동 주민센터, 양재·내곡·우면도서관, 내곡열린문화센터, 여의천 소원카페
	꿈이꿈틀교육	·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상권 연계 교육(원데이 클래스 등) 및 취업 연계사업 확대

- 조직은 1사무국 3팀(경영지원팀, 상권사업팀, 사업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9월 30일 기준 정원 10명, 현원 6명이고 현장 사업인력을 포함할 경우 총 79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재 본사 사무실은 서초50플러스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영지원팀과 사업관리팀 직원 일부가 근무하고 있으나, 사무공간이 53.3㎡(약 16평)에 불과하여 본사 업무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회의·상담·교육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상권사업팀은 인접한 내곡느티나무쉼터 2층에 별도로 배치되어 있어 동일한 회사의 업무공간이 두 곳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서 간 협의와 자료 공유, 회의 개최 및 공용 비품·문서 관리 등 통합적인 업무 수행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통합사무실 이전 추진

-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현재 53.3㎡ 규모의 공간에서 사무국 및 일부 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상권사업팀 등 일부 업무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회사의 업무기능이 공간적으로 분산된 상태임.
- 이에 따라 부서회의, 외부기관 협의, 면접 및 사업회의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근로자 면담 및 고충상담을 위한 별도의 공간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근로자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 등을 자체 공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외부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므로 교육장소 대관 등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아울러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계약서류, 회계자료, 사업실적 자료 및 각종 사업물품 등을 보관할 문서고 및 물품보관 공간도 충분하지 않아 자료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내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받아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통합 업무거점으로 활용하고, 현재 분리되어 있는 본사 업무기능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부서 간 협업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시 설 명	서초여성일자리(주) 사무실	**서초여성일자리(주) (통합)사무실**	
시설성격	본사 사무공간	**지역 일자리 사업 통합운영 거점**	**【양재동 1-26 역세권 청년주택】** - 전체시설 규모 · 지하 7층, 지상 22층 · 연면적 : 32,667㎡ - **준공시기 : '27. 5월 (예정)** - 기부채납 면적 · 건물 334.88㎡ · 토지 지분 66.79㎡
위 치	염곡말길 9, 서초50플러스센터 3층 염곡말길 9, 내곡느티나무쉼터 2층	양재동 1-26 **역세권 청년주택** 지상 3층 일부	
면 적	53.3㎡, **약 16.1평**	334.88㎡, **약 101.3평**	
공간구성	사무공간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교육장, 창고·문서고, 탕비실 등	- **회의·상담·교육공간 등 신설**

- 기부채납받는 시설은 지상 3층 일부 334.88㎡(약 101평)로, 기존 사무공간 53.3㎡와 비교하면 약 6.3배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게 됨. 이를 활용하여 개방형 업무공간, 대표실 및 응접공간, 회의실, OA·서버공간, 문서·물품 수납공간, 탕비실 및 휴게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임.
- 특히 개방형 업무공간에는 3개 팀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0석 규모의 좌석을 배치하고, 회의실과 교육장을 일반 업무공간과 분리하

여 내부 업무와 외부 교육·상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임. 또한 방문객과 교육장 이용자의 동선이 직원의 업무공간을 직접 통과하지 않도록 주출입구 인근에 안내·대기공간을 배치하고, 회의실과 교육장을 업무공간 외곽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음.

<사무실 이전 후 공간 활용 계획>

공간	수용규모	면적(㎡)	계획 기준
개방형 업무공간	직원 30명	132.00	3개 부서 총 30석, 1인당 약 4.4㎡(팀 내부동선 포함)
대표실	1명+응접	18.00	4인 간이응접 및 문서보관 포함
회의실	10~12명	22.00	화상회의 장비와 보조 수납 포함
교육장	24~30명	50.00	강의형 24석, 의자형 최대 30석
안내·대기	4명 내외	12.00	주출입구 인접 배치
OA·서버	공용	12.00	복합기·우편·네트워크 장비
문서·물품수납	공용	10.00	보존문서·소모품·청소도구
탕비·휴게	공용	10.00	급배수 위치 확인 후 배치
벽체·주동선·여유	공용	68.88	주동선 1.5m, 보조통로 1.2m 계획기준
합계	-	334.88	

- 이를 통해 기존에는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회의·상담·교육 및 문서보관 공간 등을 함께 마련하여 단순한 본사 사무실 이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상권 활성화, 사회적 약자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직무교육 및 취업연계 등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업무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합사무실 공간 활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기부채납받는 공공기여시설은 건물 준공 후 실제 공간에 대한 현장 실측과 소방·피난, 냉난방·환기, 전기·통신 및 배수 등 시설 여건을 확인한 후 내부 공간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임. 따라서

현재 검토 중인 공간 활용계획은 제공된 도면과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개략적인 계획으로, 준공 이후 실제 시설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재산 자체에 대한 취득비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사무실 이전을 위해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 사무용 집기 및 비품 구입 등에 별도의 예산이 소요됨. 다만, 사무실 이전에 드는 비용은 모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구비 편성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사용 중인 서초50플러스센터 3층 및 내곡느티나무쉼터 2층의 사무공간은 신규 공간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주식회사 소유의 사무용 가구, 전산장비 및 문서 등도 함께 이전할 계획임. 기존 사무실은 시설관리부서와 인계 범위 및 시기를 협의하여 서초50플러스센터 및 내곡느티나무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전 후 기존 사무실이 유휴공간으로 남지 않도록 서초50플러스센터 및 내곡느티나무쉼터의 부족한 교육·프로그램 공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최종 용도는 재산관리관인 어르신행복과에서 확정함.
- 특히 기존 사무실은 현재 사용 중인 공간이므로 새로운 시설의 준공 및 기부채납 절차, 내부 공간 조성, 기존 시설의 사용 종료 및 이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재동 1-26 역세권 청년주택의 준공은 2027년 5월로 예상됨에

따라 2027년도 하반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가구 및 집기 등을 구매할 계획으로, 전산·통신설비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서초일자리주식회사의 본사 이전 및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소관부서는 공사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현장 실측결과를 반영한 공간 구성계획을 보완하고 설비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의 추진일정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사무실 이전 및 통합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 일정을 면밀히 조정하고, 이용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는 등 이전 및 통합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여시설 활용의 적정성

- 해당 공공기여시설은 당초 수어통역센터 용도로 계획되었으나, 2025년 12월 부서 수요조사 및 2026년 1월 정책결정협의회를 거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통합 업무공간으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계획된 공공시설의 용도를 변경하여 구 출자기관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사항인 만큼, 단순히 기관의 사무공간을 확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시설을 공공기여시설로 취득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수행하는 공공클린, 늘봄카페, 늘풀 플랜테리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직무교육·취업연계 사업 등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시설을 통합 업무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공공기여시설의 활용 목적과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는 건물은 임차시설과 달리 구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으로 등록·관리하게 되므로,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 다만, 해당 시설이 구 출자기관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만큼 시설의 일부를 특정 기관의 일반적인 사무공간으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지역 일자리 사업 수행과 연계한 회의·교육·상담 등 공공적 기능을 적절히 확보하고 향후에도 당초 활용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받는 지상 3층 일부 334.88㎡와 이에 귀속되는 토지 지분 66.79㎡를 취득하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분산된 업무공간을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별도의 취득비용 없이 상당 규모의 공유재산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재산의 취득 필요성은 인정됨.
- 특히 현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53.3㎡의 협소한 본사 공간과 별도의 사업공간으로 업무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조직 운영 및 부서 간 협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334.88㎡ 규모의 통합 업무공

간을 확보할 경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회의·상담·교육·문서보관 등의 기능을 함께 배치하여 업무환경과 공간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 등 공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공공기여시설을 회사의 통합 업무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기여시설의 활용성과 지역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시설은 현재 건축공사 중인 시설을 준공 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실제 취득 시점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최종 건물 면적과 토지 지분, 재산가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채납 절차 완료 후 공유재산 등록 및 재산관리관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안건은 현재 분산되어 있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업무기능을 통합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기여시설의 취득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활용목적은 인정되나, 준공 후 실제 시설 여건을 반영하여 세부 공간계획을 확정하고, 공공기여시설로서의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②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기부채납) - 아동청년과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출 경위

-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건립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해당 시설 중 일부를 공공업무시설로 취득하는 사항임.
-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내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사업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취득 대상 재산으로 토지는 공공기여시설에 귀속되는 대지권 지분 66.79㎡이며 기준가격은 2,504,625천원(㎡당 공시지가 37,500천원)이고, 건물은 지상 2층 일부 연면적 334.88㎡로 신축비 기준 6,560,000천원으로 추계되어 총 기준가격은 9,064,625천원임.
- 해당 재산은 토지 및 건물의 기부채납을 통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면적은 1건당 1,000㎡ 미만이나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산에 해당함.
- 또한 해당 기부채납은 토지 66.79㎡와 건물 334.88㎡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증가가 있으며, 취득 후 공공업무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행정재산에 해당함.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직접 관리하고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

시 제2026-39호, 2026. 6. 5. 발령·시행) 별표 1 제1호의 기부채납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기부채납 요건 충족 여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 기부대상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방　　법 :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 제외기준 해당여부
  - ▸관리가 곤란한 재산: (해당 없음) 재산관리관(아동청년과)를 지정하여 관리
  -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해당 없음)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분소)로 활용
  - ▸조건이 수반된 재산: (해당 없음) 기부채납 조건 없음
  - ▸사권이 설정된 재산: (해당 없음) 저당권 등 설정된 사권 없음

○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기관으로, 2018년 7월 개소하여 서초구 거주 청소년(9~24세)과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료 및 검사, 학교폭력·자살예방교육,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및 통합지원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센터 본원은 방배동 방배유스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곡분소는 신원동 내곡열린문화센터 3층에 위치하여 양재·내곡권역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요 >

□ **본원 일반현황**

- ○ **위치 및 규모** : 서초구 방배동 1031-4 방배유스센터 2층(329.27㎡)
- ○ **이용대상** : 서초구 거주 청소년(9~24세) 및 부모
- ○ **운 영 체** : 비티에프푸른나무재단(이사장 : 이종익 / 센터장 : 양미라) ※ 운영인력 21명
- ○ **위탁기간** : 2025.1.1.~2029.12.31. ※ 개관일 및 최초위탁일 '09.4.23.
-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운영예산('26) : 618백만원
- ○ **주요사업** : 상담사업, 심리치료 및 검사, 학교폭력·자살예방교육,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 통합지원서비스 연계 등

□ **분소 일반현황**

- ○ **위치 및 규모** : 서초구 신원동 265 내곡열린문화센터 3층(77.66㎡)
- ○ **이용대상** : 서초구 거주 청소년(9~24세) 및 부모
- ○ **운 영 체** : 비티에프푸른나무재단(이사장 : 이종익 / 센터장 : 양미라)
  ※ 운영인력 총2명(상주인력 1명, 로테이션 근무자 1명)
- ○ **위탁기간** : 2025.1.1.~2029.12.31. ※ 개관일 및 최초위탁일 '18.7.
-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운영예산('26) : 618백만원 ※ 본원과 통합
- ○ **주요사업** : 방배본원과 운영 성격은 똑같으나, 규모가 작아 개인·집단상담, 심리치료 위주의 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부모집단 상담이 특화되어 있음. 대부분 양재·내곡권역 대상자 중심(본원은 서초·방배·반포권역 대상자 중심)

- 내곡분소는 본원과 운영 성격은 유사하나, 77.66㎡의 비교적 협소한 공간으로 개인상담실 1개, 집단상담실 1개 및 심리치료실 1개를 운영하고 있어 상담 및 심리치료 기능을 확대하는 데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청소년 상담사업은 최근에도 상당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종합정보시스템 기준 상담 및 복지지원 실적은 2024년 53,218건에서 2025년 55,20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상담 47,209건을 비롯하여 보호지원 3,697건, 활동지원

1,947건, 안전지원 1,357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청소년 상담사업 추진 실적>

세부사업/사업연도	총계	상담심리	건강지원	주거지원	보호지원	생활지원	돌봄지원	교육지원	법률지원	안전지원	활동지원
2025	55,209	47,209	-	-	3	3,697	585	168	243	1,357	1,947
2024	53,218	46,978	6	-	1	3,674	212	179	367	811	990
2023. 6. ~ 12.	32,168	28,953	4	10	2	337	0	227	113	4	2,518

- 이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및 위기 상황에 대한 상담·지원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 내곡분소의 제한된 공간만으로는 상담 및 심리치료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이전 추진

- 서초구는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내 공공기여시설을 활용하여 현재 신원동 265번지 내곡열린문화센터에 위치한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를 이전하고, 기존 분소의 상담·심리치료 기능을 확대하여 청소년 심리상담 및 치료에 특화된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함.
- 현재 내곡분소는 내곡열린문화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어 양재·내곡권역 청소년 및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내곡동에 위치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의 이용 접근성에 일정한 제약이 있고, 77.66㎡의 제한된 면적으로 인해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치료 등 기본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된

프로그램과 위기 대응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적정한 공간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 또한 방배유스센터 2층에 위치한 본원의 운영 인력 및 이용자수도 기존대비 상당수 증원되어 직원 사무실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이 협소함에 따라 본원의 운영 인력 및 기능 또한 일부 이전하여 방배본원과 양재센터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운영을 계획 중임.
- 이에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기여시설 중 지상 2층 일부 334.88㎡를 활용하여 기존 분소 이전 및 본원의 인력 및 기능을 일부 이전하고, 기존 면적의 약 4.3배에 해당하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및 보호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상담·치료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적 심리지원, 교육 및 집단상담, 심리응급 대응, 가족회복 지원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임.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시설성격	개인·집단상담, 심리치료 중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반의 통합 심리지원시스템	청소년 심리상담·치료 기능 확대 및 특화
위 치	서초구 신원동 265	서초구 양재동 1-26	
면 적	77.66㎡	334.88㎡	기존 대비 약 4.3배 확대
공간구성	개인상담실 1, 집단상담실 1, 심리치료실 1	개인상담실 3, 심리치료실 1, 교육실·집단실 1, 심리응급실 1, 대기실 1, 직원사무실 1 등 * 공간 구성 기획 중	상담·치료·심리응급 공간 등 확충

- 신규 공간은 현재 공간보다 약 4.3배 넓은 334.88㎡ 규모로, 개인상담실 3개(각 3평), 심리치료실 1개(8평), 교육·집단실 1개(25평), 심리응급실 1개(15평), 대기실 1개(15평) 및 회의공간을 포함한 직원사무실(20평)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공간 구성은 건물 준공 후 실제 면적 및 시설 여건

을 확인하고 소방·피난, 냉난방·환기, 전기·통신 등 관계 기준을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임.

- 분소의 이전을 통해 기존의 상담·심리치료 기능을 확대하여, 평상시 청소년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예방적 지원부터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위기 시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 부모·가족의 회복 지원까지 연계하는 청소년 중심의 통합 심리지원 공간을 구축하려는 것임.
- 특히 기존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자해 청소년 대상 '고위기집중심리클리닉'을 확대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초구 청소년 심리클리닉'을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위기 상황 발견 및 접수부터 상담, 전문가 자원 연계, 가족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아울러 경찰・의료・법률・상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초 청소년 심리클리닉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회복 클리닉' 등 대상별・상황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음.
- 청소년 상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현재 내곡열린문화센터에 위치한 분소를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이전함으로써 청소년 및 보호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분소 공간 활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기부채납받는 공공기여시설은 건물 준공 후 현장 여건 및 실제 사용공간을 확인하여 상담실, 심리클리닉, 교육실, 대기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세부 공간배치를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및 기반 공사를 실시한 이후 물품 구입 등을 추진할 계획임.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이전 관련 소요예산 추계>

□ **2027년 소요예산(안)** : 630,650천원

- 시설비 529,900천원, 감리비 7,150천원, 시설부대비 3,6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0천원

(단위 : 원)

합 계	시 설 비 및 부 대 비			자산취득비	비 고
	1)시설비	2)감리비	3)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0,650,000	529,900,000	7,150,000	3,600,000	90,000,000	

-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재산 자체에 대한 취득비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이전을 위해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 사무용 집기 및 비품 구입 등에 별도의 예산이 소요됨. 현재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포함하여 약 6억 3,065만원의 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사 및 물품 구입 내역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무용 기존 가구, 전산장비 및 문서 등도 신규 사무실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필요 가구·물품만 신규 구매할 예정임. 아울러 이전 후

기존 사무실이 유휴공간으로 남지 않도록 향후 활용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새로운 시설의 준공 및 기부채납 절차, 내부 공간 조성, 기존 시설의 사용 종료 및 이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소 이전 과정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기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양재동 1-26 역세권 청년주택의 준공은 2027년 5월로 예상됨에 따라 2026년 9월부터 공간조성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2027년 상반기에는 설계용역 및 내부공사 발주 준비 등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2027년 하반기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곡분소를 이전할 계획임.
- 따라서 소관부서는 공사현장 방문·점검을 통해 현장 실측결과를 반영한 공간 구성계획을 보완하고 설비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인테리어 공사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분소 이전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 일정을 면밀히 조정하고, 이용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는 등 이전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임.

○ 공공기여시설 활용의 적정성

- 해당 시설은 당초 공공기여를 통해 우리 구가 취득하는 행정재산으로, 단순한 사무공간 확보보다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기관으로서 상담, 심리치료 및 검사, 학교폭력·자살예방교육, 위기청소년 지원 등 공공성이 높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여시설을 분소로 활용하는 것은 기부채납 시설의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분소는 개인·집단상담 및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모집단상담을 특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상담실, 심리클리닉, 교육실 및 회의실 등 기능별 공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면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교육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공공기여시설이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으로만 활용되지 않도록 당초 취득 목적에 맞게 상담·심리치료·교육 등 청소년 대상 공공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고, 향후에도 해당 시설의 공공목적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

- 본 건은 양재동 1-26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받아 토지 66.79㎡ 및 건물 334.88㎡를 취득하고, 이를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곡분소 이전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재 내곡분소는 77.66㎡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상담 및 심리치료,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공간상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

이나, 이전 대상 공간은 334.88㎡로 기존 공간보다 약 4.3배 넓어 사무실과 상담실, 심리클리닉, 교육실, 회의실 및 대기공간 등을 기능별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심리치료 및 위기청소년 지원 등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해당 시설을 분소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기여시설의 취득 목적 및 행정재산의 공공적 활용 측면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부채납을 통한 재산 취득 자체에는 별도의 취득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이전을 위해서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공간조성 및 집기·장비 구비 등에 구비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구비로 편성할 예정임. 따라서 2027년 이전·개소 일정에 맞춰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세부 공간계획 및 공사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부채납 이후 최종 건축물 현황 및 등기사항, 토지 지분, 기준가격 등의 재산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재산관리관 지정 및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체계를 명확히 하여 취득 이후에도 해당 시설이 청소년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건은 청소년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기존 분소의 공간적 제약을 개선하여 분소의 특화된 개인·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이전의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됨.

③ 서초구 아버지센터 이전(기부채납) - 교육지원과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출 경위

-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해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을 공공시설로 취득하는 사항임.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경위>

○ 〔'12. 02. 09.〕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서울시 고시 제2012-33호)
○ 〔'16. 04. 29.〕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 요청(서초구 → 서울시)
○ 〔'16. 05. 18.〕	(9차)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 〔'16. 10. 21.〕	(주거개선과)방배삼익(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협의
○ 〔'16. 11. 09.〕	(주거개선과)방배삼익(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검토의견 제출 촉구(공공시설)
○ 〔'16. 12. 01.〕	(주민행정과)공공시설로 아버지 센터 건립 의견 회신
○ 〔'17. 05. 23.〕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공공청사(아버지센터), 연면적 1,692㎡〕
○ 〔'17. 06. 29.〕	방배삼익(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226호)
○ 〔'19. 03.~04.〕	서초구 아버지센터 기본설계안 협의 및 회신
○ 〔'19. 05. 22.〕	방배삼익(아)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처리
○ 〔'19. 06. 19.〕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계(안) 보고회 개최
○ 〔'19. 10. 02.〕	설계안 보완 관련 고도원 이사장 면담(차별화된 외관 디자인 보완)
○ 〔'20. 05. 24.〕	시공사 선정(대림산업), 조합장 선출
○ 〔'21. 12. 24.〕	방배삼익(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 〔'23. 11. 21.〕	착공신고 처리
○ 〔'24. 08. 09.〕	(조합)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설계 일부변경)
○ 〔'27. 10.〕	준공 예정

-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취득 대상 재산은 방배동 1018-1번지에 위치한 토지 884㎡(267평)와 지하 1층~지상 3층의 연면적 1,692㎡(512평)의 건물로, 토지 기준가격은 17,299,880천원(㎡당 공시지가 19,570천원), 건물 기준가격은 5,348,835천원이며 총 기준가격은 22,648,715천원임.

- 따라서 해당 재산은 토지 및 건물의 기부채납을 통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토지 면적은 1건당 1,000㎡ 미만이나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함.
- 또한 해당 기부채납은 토지 884㎡와 건물 1,692㎡를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증가가 있으며, 취득 후 공공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행정재산에 해당함.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직접 관리하고 서초구 아버지센터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 2026. 6. 5. 발령・시행) 별표 1 제1호의 기부채납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기부채납 요건 충족 여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

- 기부대상 : 부동산(토지 및 건물)
- 방　　법 :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 제외기준 해당여부
  - ▸관리가 곤란한 재산: (해당없음) 재산관리관(교육지원과) 지정하여 직접 관리
  -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해당없음) 서초구 아버지센터로 활용
  - ▸조건이 수반된 재산: (해당없음) 기부채납 조건 없음
  - ▸사권이 설정된 재산: (해당없음) 저당권 등 설정된 사권 없음

○ 서초구 아버지센터 운영 현황

- 서초구 아버지센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아버지들이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건강·취미·예술·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 간 소통 및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서초구 아버지센터 현황 >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 및 관리)
○ **위치및규모** : 방배열린문화센터(서초구 방배로 173) 5층 / 253.91㎡(77평)
○ **이용대상** : 아버지(남성)
○ **운 영 체** : (재)아침편지문화재단(이사장 : 고도원 / 센터장 : 이하림) ※ 운영인력 4명
○ **위탁기간** : 2026.1.1.~2028.12.31. ※ 개관일 및 최초위탁일 '16.7.1.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운영예산('26) : 236백만원
○ **주요사업** : 아버지들을 위한 건강·취미·예술·치유 등 다양한 강좌 운영, 가족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아버지들의 네트워크 구축, 구 행사 내 합창 공연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 현재 방배열린문화센터 5층(방배동 852-14번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253.91㎡(약 77평)로 강의실 1개, 사무실 1개, 커뮤니티존 1개로 구성되어 있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기관은 (재)아침편지문화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임.
- 주요 사업으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취미·예술·치유 분야 강좌, 가족 치유 및 소통 프로그램, 인문학·금융·퇴직 준비 등 사회적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특강을 비롯하여 공연·발표회 등 재

능나눔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아버지들의 자기계발과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 내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시설은 강의·상담·커뮤니티 기능을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어 프로그램별 공간을 구분하거나 참여인원에 따라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운동·요리, 악기·음악, 클럽활동 등 별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고,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하는 강좌나 행사 등을 진행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임.
- 최근 강좌 운영실적을 보면 2021년 43개 강좌, 수강인원 714명에서 2025년에는 175개 강좌, 2,240명이 참여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26년에도 8월 말 기준 117개 강좌에 1,152명이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이용 수요가 확인되고 있음.

○ 서초구 아버지센터 이전 추진

- 현재 아버지센터는 약 77평 규모의 제한된 공간에서 강의·상담·커뮤니티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참여자 규모에 따라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3060 아버지 맞춤형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시설성격	아버지 대상 교육·문화·치유 공간	**아버지 맞춤형 교육·문화 복합공간**	기능 확대
위 치	방배열린문화센터 5층	**방배동 1018-1번지**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부지
면 적	253.91㎡(약 77평)	**1,692㎡(약 512평)**	약 6.7배 확대
공간구성	강의실 1, 사무실 1, 커뮤니티존 1	**강당, 교육실, 상담실, 운동실, 요리교실, 라운지·라이브러리, 취미공간, 힐링라운지, 테라스 등**	기능별 공간 확보

- 이전 대상 시설은 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부지인 방배동 1018-1번지에 조성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건축물로, 연면적은 1,692㎡(약 512평)이며 기존 시설의 약 6.7배 규모임. 기존의 단일 강의실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교육, 운동, 요리, 상담, 휴식, 독서 및 커뮤니티 활동, 대규모 강연, 행사 등이 기능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서초 아버지센터 이전 층별 세부 시설(안)>

구분	항목	층수	(연)면적(㎡)	세부시설용도
취득	토지	-	884	
	건물 신축	옥상층	-	-
		지상3층	412.94	운동실, 요리교실, 힐링라운지, 테라스
		지상2층	298.69	교육실(2), 사무실
		지상1층	469.06	라운지&라이브러리, 취미공간, 상담실
		지하1층	511.31	강당

- 층별로 지하 1층에 511.31㎡ 규모의 강당을 조성하고, 지상 1층에는 라운지&라이브러리, 취미활동 공간 및 상담실을 배치하며, 지상 2층에는 2개의 교육실과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상 3층에는 운

동실, 요리교실, 힐링라운지 및 테라스를 배치하여 교육·문화·건강·치유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 특히 기존 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던 교육 및 커뮤니티 기능을 대규모 강당과 복수의 교육실, 라운지 및 테라스 등으로 확대할 수 있어 강좌 및 특강의 규모와 유형을 다양화하고, 아버지들의 자발적인 교류와 참여를 촉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전에 따른 공간 활용 및 향후 추진계획

- 기부채납받는 시설은 단순한 교육공간을 넘어 '휴식-성장-소통'이 공존하는 3060 아버지 맞춤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현재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신규 시설의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기존에 추진해 온 건강·취미·예술·치유 분야 강좌와 가족 치유·소통 프로그램 등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 시설의 공간적 여건을 활용하여 운동·요리·공연·발표회·클럽·커뮤니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버지들의 교류와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시설 이전에 따른 공간적 장점을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준공 및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로 실제 공간 및 시설 여건을 확인하여 세부 공간배치와 운영 동선을 점검하고, 필요한 내부 집기와 시설 등을 갖추는 등 이전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2027년 1월부터 4월까지 내부공

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 상반기 중 인테리어 공사비를 구비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확보할 예정임.

<서초구 아버지센터 사무실 이전 관련 소요예산 추계>

□ **소요예산(안)**

○ 총 예산 : 1,532,409천원

(시설비 1,192,409천원 + 자산취득비 300,000천원 + 사무관리비 40,000천원)

(단위 : 천원)

합 계	시 설 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비 고
	소 계	1)공사비 (건축·전기·통신)	2)설계비	3)감리비	4)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32,409	1,192,409	1,085,587	86,630	13,353	6,839	300,000	40,000	

- 소관부서는 향후 준공 및 이전 시기를 고려하여 세부 이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나아가 내부공사 설계용역, 공사 및 시설 구비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할 것임.
- 해당 시설은 2023년 11월 21일 착공하였으며, 2027년 10월 준공 예정임. 준공 이후 2027년 11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2028년 3월 중 가구·기자재 설치 및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여 2028년 4월 중 센터를 정식 개관하고 업무를 개시할 계획임.
- 신규 시설은 기존 시설보다 규모가 확대되고 교육·상담·운동·요리·행사·커뮤니티·취미활동 등 기능별 공간이 확보되는 만큼,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의 규모와

기능에 맞게 건강·취미·예술·치유 및 가족소통 등 기존 사업의 운영 규모와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재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시설은 협소하고 노후된 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제약이 있었으나, 신규 시설로 이전하면 다목적 교육·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고 기능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 및 프로그램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기존 방배열린문화센터 5층 공간은 아버지센터 이전에 앞서 유휴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 인계 및 관리 사항은 시설관리부서(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이전 이후에도 해당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공공시설 활용의 적정성

- 해당 시설은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로 조성되어 우리 구에 기부채납되는 재산으로,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이 아닌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치유 및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서초구 아버지센터는 아버지의 건강과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족 치유 및 소통 프로그램, 지역사회 재능나눔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성이 인정되는 시설이며, 기존 이용 수요와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고려할 때 보다 넓고 기능

적으로 구분된 공간으로 이전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것임.

- 특히 기존 시설보다 약 6.7배 넓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강당, 교육실, 운동실, 요리교실, 상담실, 라운지 및 테라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사업의 확대와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부채납 시설의 취득 목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아버지센터의 고유 기능인 교육·문화·치유 및 가족소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리·운영하고, 시설의 규모에 상응하는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시설로서의 기능과 활용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검토의견

- 본 건은 방배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공공시설을 기부채납받아 토지 884㎡ 및 건물 1,692㎡를 취득하고, 이를 현재 방배열린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서초구 아버지센터의 이전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재 아버지센터는 253.91㎡(약 77평) 규모의 공간에서 다양한 교육·문화·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의 한계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참여인원에 따른 탄력적인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음. 반면, 이전 시설은 연면적 1,692㎡로 기존 시설보다 약 6.7배 넓고, 강당·교육실·운동실·요리교실·상담실·라운지 등 기능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데 적정한 규모로 판단됨.

- 또한 아버지센터는 건강·취미·예술·치유 분야의 교육과 가족소통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강좌 수와 수강인원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이용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여시설을 해당 시설의 이전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재산 취득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 자체에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나, 준공 이후 공간조성, 집기 및 시설 구비,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향후 구체적인 공간배치와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면밀히 산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과정에서도 신규 시설의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기부채납 이후에는 최종 준공면적,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 토지 소유권 및 재산가액 등을 확인하고 재산관리관 지정 등 공유재산 관리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며, 기존 방배열린문화센터 공간에 대해서도 이전 이후 유휴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사전에 협의해야 할 것임.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건은 기존 아버지센터의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교육·문화·건강·치유 및 가족소통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과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아버지센터 이전의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법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공유재산 처분 대상은 없으며, 토지는 총 3건 면적 1,017.58㎡, 금액 22,309,130천원, 건물은 총 3건 연면적 2,361.76㎡, 금액 18,468,835천원이 증가함.

○ 금번 제출된 안건의 사업은 모두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건축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건축허가 후 기부채납을 받아 지분 및 건축물의 등기를 완료하면 우리 구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 소관부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행정재산이 당초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및 운영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각 시설의 이용 대상과 기능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통합사무실 이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곡분소 이전 및 서초구 아버지센터 이전

등 3건으로, 기존 시설의 공간적 제약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각 시설의 기능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시설 등을 활용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임.

○ 각 사업은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중년 남성의 교육·문화·치유 등 대상별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이전을 통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적정한 규모와 환경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됨. 특히 기존 시설의 협소한 공간과 시설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던 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 수행상의 제약을 완화하고, 기능별 공간을 확보하여 시설 활용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 취득 자체에는 별도의 예산 부담이 없더라도,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분소 및 서초구 아버지센터는 이전 시 시설의 내부공사, 가구·기자재 구비, 이전 및 개관 준비 등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사업별 세부 소요예산과 재원 조달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이전 이후에도 시설 규모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증가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도 사전에 마련하여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3건은 기존 공공서비스 시설의 공간적 제약과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각 시설의 기능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여 공공서비스의 질과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시설 이전의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공간조성 및 이전계획에 따른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취득 이후 재산관리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당초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각 소관부서는 사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공유재산 취득 및 시설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권리관계 및 시설 하자 등으로 인해 향후 구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 검토와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 : 기부채납 재산은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번 기부채납 대상은 신축시설로서,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전시설의 경우 준공 시 관련 기준에 따라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보증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응할 예정이며, 보증기간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 회사에서 부담할 예정임.

질〉 **기부채납 시설로 이전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 및 시설이 유휴공간으로 남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 :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사용 중인 서초50플러스센터 내 공간은 어르신행복과에서 시설 목적에 맞게 활용할 예정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곡분소의 기존 공간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아버지센터의 기존 공간 역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복지·문화시설 또는 주민자치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계할 예정임.

추가의견〉 시설 이전 후 기존 공간이 유휴시설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계부서 간 협의를 통해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